



시 보



제1636호 2024. 3. 11.(월)

규 칙

-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2
-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3
-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

공 고

-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9
-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 공고----- 2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규칙 제 1867 호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
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
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6조(평가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부서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 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표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제5조 관련)

평가영역	주요 검토 내용	평가결과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 등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③ 해당 없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약함/강함) ③ 해당 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③ 해당 없음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대표성 확보) ② 없음(대표성 부족) ③ 해당 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③ 해당 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input type="checkbox"/> 조 례	<input type="checkbox"/> 규 칙	<input type="checkbox"/> 훈령·예규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 정	<input type="checkbox"/>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별지 제3호서식]

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서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		조치일	20 . . .
관련조문	조치요구 사항	조치결과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규칙 제 1868 호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사무소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징수관: 안전도시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3. 재무관: 안전도시건설국장
4.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안전도시건설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7. 부채관리관: 안전도시건설국장
8.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9.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10. 수입금출납원: 징수·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11. 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준용)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관직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대중교통과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한 관직 신설 사항은 목포시 규칙 제1864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24. 1. 2. 시행>의 공포 날로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국체전추진단”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3호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②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하고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규칙 제 1869 호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허가를”을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조례 제14조 제1항”을 “조례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를 “제29조제2항”으로,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제23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15조의 입장료”를 “입장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전용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정산한다.

제3조의2(강사수당)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물 관리 외에 해당 종목 분야 발전을 위해 강습을 하는 경우 사회체육지도자에게 강습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한다.

1. · 2. (생략)

제5조(검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 발매) 조례 제15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조제1항-----

-----.

제3조의2(강사수당) ----- 제29조제2항-----

-----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 지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검표) --- 제21조제2항-----

-----.

제7조(입장권 발매) 입장료 -----

-----.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 공고

목포시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공개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목포시보건소

1 모집분야 및 인원

사업명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합 계		8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활체육, 스포츠 댄스 등 놀이체육	3	- 해당 교과 전공자 - 모집분야 관련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각 분야별 강의 경험이 풍부한자 - 해당과목 관련 분야 협회 입상수상 실적이 있는 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금연교육 전문강사	5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1)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 2)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기준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사람

- 1) 해당교과 전공자
- 2) 모집 분야 관련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
- 3) 해당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 4) 각 분야별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 5) 해당과목 관련 분야 협회 입상·수상 실적이 있는 자

3 강의형태 및 수당

가. 사업기간 : 2024년 4월~12월(프로그램 종료 시)

※ 사업 기간은 코로나19 및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강사수당 : 1회/1시간 당 80,00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 추후 변동시 변동적용
다. 진행방법 : 목포시보건소 내 프로그램 운영 수업

4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

가. 서 류 심 사 : 응시지원서, 강의계획서 등 서류심사

나. 면 접 심 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진행 : 2024. 3. 21.(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별도 통보하며 응시자가 정원이내인 경우
면접심사 없이 채용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 2024년 3월 22일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3. 8.(금) ~ 3. 15.(금)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3. 14.(목) 09:00 ~ 3. 15.(금) 18:00(2일간)

나. 접수방법

- 방 문 접 수 : 목포시 보건소 1층 접수처(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 문의사항: 목포시 건강증진담당자 ☎061-270-8925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나. 이력서 1부(서식 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다. 강의계획서 1부(서식 3)
-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 마. 관련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바.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사. 강사등록카드 1부(서식 5) ※ 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강사로 선정된 경우 목포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의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자(☎ 270-8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접수번호	
------	--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최종학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년 월 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보건소장 귀하

[서식2]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연락처)	새주소로 기입		
		① 자택전화() ② 이동전화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3]

강 의 계 획 서

과목명		강사명	
강의목표			

강의내용

회차	주제	강 의 내 용	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성명: 2024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서식은 강의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목포시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프로그램 강사 모집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근무 기간 종료 후 3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채용 모집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보건소장 귀하

강사등록카드

구분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명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주택)	(직장)
	E-mail		휴대전화
과정명			
교과목			
은행명 및 계좌번호	(00은행) 000-00-000000		
학력	학교	학위	전공과목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직책
	0000.00 - 0000.00		
연구실적*			
강의내역*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강사등록, 강사비 지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학력, 주요경력, 연구실적, 강의내역 ■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활동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강사등록 및 강사비 지급의 서비스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 수집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등록 및 강사비 지급의 목적으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사진·비디오 촬영 및 활용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있으며 촬영된 자료는 해당보건지소 재활보건팀에서 소유합니다. 또한 위 정보가 목포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